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6. 7. 6.

공주시

기획감사실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6. 6. 23. ~ 6. 26. (4일간)
○ 수감대상 :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 감사범위 : 2023. 6. 2.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7명(기획감사실장 외 6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 발생 등

Ⅱ. 감사 결과

○ 행 정 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의/개선	
37	12	19	-	1	5	-

○ 재 정 상

(단위 : 원)

구 분	계	환 수	부과·징수	감 액	지 급
계	**5,375,490**	5,375,490	0	0	0
본 처 분	5,375,490	5,375,490	-	-	-
현지처분	0	-	-	-	-

○ 신 분 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문책(훈계)	문책(주의)	비 고
8	-	-	1	7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징수	감액
계	**31건**	**0**	**8**	**12**	**19**	**0**	**5,375,490**	**5,375,490**	**0**
1	청사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홀				1				
2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1				
3	☆☆☆☆센터 운영 관리 소홀				1				
4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1				
5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6	회의 참석수당 지급 소홀				1				
7	보통예금 통장관리 소홀			1					
8	비공무원 채용 관리 소홀				1				
9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1			480,000	480,000	
10	통장수당 지급 소홀			1			184,090	184,090	
11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5		1				
12	지출품의 관리 및 계약정보 공개 소홀				1				
13	계약관리 소홀			1					
14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1				
15	회계서류 증빙 미흡				1				
16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2,989,000	2,989,000	
17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1			1,548,000	1,548,000	
18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1				
19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1				
20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1				
21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소홀				1				
22	인감변경 신고업무 소홀			1					
23	전입(재등록)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소홀				1				
24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업무 소홀		1		1				
2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1		1				
26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소홀			1					
27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업무 소홀			1					
28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1			49,780	49,780	
29	여비 지급 소홀			1			124,620	124,620	
30	당직근무 관리 소홀				1				
3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2)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징수	감액
계	**6건**	**0**	**0**	**1**	**1**	**4**	**0**	**0**	**0**
1	복무관리 소홀			1					
2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소홀				1				
3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의무 소홀					1			
4	법정부담금 계상 소홀					1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1			
6	일삼감사 절차 미이행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소방훈련(교육) 실시 현황

연도	소방훈련 계획 수립 여부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횟수)	비고
2023년	**미수립**	**미실시**	
2024년	**수립(11.11)**	**1회 실시(소방관서 합동훈련_11.20)**	
2025년	**수립(8.29)**	**1회 실시(소방관서 합동훈련_9.10)**	
2026년	-	-	

나.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의 제1항에 의하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의 각 호 중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공기관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23년은 소방훈련 계획 수립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소방훈련 계획에 따라 연 1회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향후 연초에 연간 소방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상·하반기 각 1회씩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정기재물조사 추진 현황

연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비고
2023년	**미수립**	**미제출**	
2024년	**미수립**	**미제출**	
2025년	**미수립**	**미제출**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한 물품관리관별 세부조사계획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매년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을 공문 발송하여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재물조사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센터 운영 보고(제출) 현황

연도	연간 운영계획	운영 결과보고서	☆☆☆☆회 심의 여부
2023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4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5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6년	**보고(2026.4.21)**	-	**부**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보고)에 의하면 제1항에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표】에서 보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회의 심의가 없었으며,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에는 ☆☆☆☆회의 심의 없이 2026월 4월 21일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1천만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총계			**1,232,557**	**1,139,222**	**93,336**	
20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22,968	394,861	28,108	
20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09,000	363,862	45,138	
202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00,589	380,499	20,09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 분할계약(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공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방법	도급 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도급자	지급명령 번호
소계			**56,690**				
2023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	수의1인 견적	19,000	2023-12-13	2023-12-13 ~ 2024-01-09	a	622
2023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	수의1인 견적	19,000	2023-12-13	2023-12-13 ~ 2024-01-09	a	624
2023	ㄹㄹㅁㅁ*단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	수의1인 견적	18,690	2023-12-13	2023-12-13 ~ 2024-01-09	b	621
소계			**22,465**				

2025	ㄹㄹ*통.**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수의1인 견적	17,761	2025-04-14	2025-04-21 ~ 2025-05-30	c	262
2025	ㄴㄴ통 ㄴㄴ길 농로 확포장공사	수의1인 견적	4,704	2025-04-14	2025-04-21 ~ 2025-05-30	c	261
소계			**38,610**				
2025	ㄷㄷ*통 화단 조성 사업	수의1인 견적	19,340	2025-05-21	2025-05-21 ~ 2025-06-17	d	271
2025	ㄷㄷ*통 가로수길 조성 사업	수의1인 견적	19,270	2025-05-21	2025-05-21 ~ 2025-06-17	d	272
소계			**34,870**				
2026	ㄷㄷ동(**2)가로수 식재공사	수의1인 견적	19,410	2026-05-22	2026-05-22 ~ 2026-06-18	d	255
2026	ㄷㄷ동(**-7) 가로수 식재공사	수의1인 견적	15,460	2026-05-22	2026-05-22 ~ 2026-06-18	d	254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일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 1-2.예산불용 최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하며.

○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연내 시설비·부대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비·부대비를 실 집행 가능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2023 ~ 2025 회계연도 예산 편성 후 위 현황과 같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주시의 건전한 예산편성을 저해하였고,

➪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지 않아 예산서상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을 분할 반영하여 총9건의 공사에 대해 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공종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금액 이내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예산 수립 시부터 **인근지역, 동일 시기,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이 예산서상 분할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내역				정비대장 등록여부	비고
지급일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10건			2,221,220		
2023.10.30.	관용차량(**조***0) 수리비 지급 결의	e	439,800	부	
2024.12.23.	관용차량(**저***8) 배터리 교체 결의	f	100,000	부	
2025.07.14.	관용차량(**저***8) 운전석 시트 수리비	g	100,100	부	
2025.08.18.	관용차량(**저***8) 수리비 지급	g	105,270	부	
2025.12.18.	관용차량(**어***8) 수리(타이어교체)	h	400,000	부	
2025.12.18.	관용차량(**어***8) 수리비	i	204,000	부	
2025.12.24.	관용차량(**저***8) 수리(타이어교체)	h	400,000	부	
2026.01.20.	관용차량(**저***8) 수리(와이퍼교체)	g	50,050	부	
2026.04.24.	관용차량(**저***8) 수리(타이어수리)	g	11,000	부	
2026.05.12.	관용차량(**조***0) 수리비	j	411,000	부	

○ 유류 수불대장 미입력 현황

유류수불 금액 내역				비고
연도	유류수불대장 급유 총금액	유류급유 지출 총금액	미입력 금액	
계	4,502,000	4,890,000	388,000	
2023	1,126,000	1,166,000	40,000	2023.6.~
2024	863,000	899,000	36,000	
2025	1,973,000	2,043,000	70,000	
2026	540,000	782,000	242,000	

※ 출처 :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 시스템-운행일지·차량정비대장, 이호조시스템 발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하여 차량수리 후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았고, 총 388,000원에 대하여 차량 유류 수불 현황을 유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누락된 차량 정비대장을 기록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회의참석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수당 지급명	기간	지급건수	증빙자료	지급액(천원)	비고
★★회의 참석수당	2023.6.~2026.6.	36	서명부	38,00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급절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심사, 실비 및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읍면동 소속 ★·★★협의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회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기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총 36회 ★★회의 회의참석 수당 총38,000천원에 대하여 별도의 결과보고서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참석부만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옥룡동 보통예금 관리 현황

개설일자	회계구분	계좌번호	계좌명	통장직인	비고
2021.09.02.	일반	비공개	보통예금 (민원실 카드수수료)	옥룡동장인	-중간수입금 출납원 미지정 -회계관직 직인 X
2014.06.12.	일반	비공개	보통예금 (민원실등기우편요금)	옥룡동장인	-회계관직 직인 X -세입세출외현금 성격 통합 권고
1993.05.18.	일반	비공개	보통예금 (카드자동이체)	옥룡동지출원인	
1997.01.04.	일반	비공개	보통예금 (지출원통장)	옥룡동지출원인	
1986.09.12.	일반	비공개	보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옥룡동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995.05.06.	-	비공개	보통예금 (옥룡동상록회)	상록회인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개설, 1-2(최소 승인・관리)에 따르면 수입금・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2024. 6. 17. 보통예금계좌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회계과-21853(2024.6.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공주시 보통예금계좌 정비를 추진하였고, 당시 총괄부서의 방침은 미사용・불필요 계좌 해지, 용도가 유사한 계좌 통폐합 등을 통해 부서별 3개 이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성상 용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개설이 가능하므로 계좌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결제대금,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은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인 경우 1개 계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구분・관리하여야한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통예금계좌 총 6개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실 등기우편 요금 납부 계좌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통합하지 아니하였고,** 2024년 보통예금계좌 정비 시 **민원실 카드 수수료 입금 계좌에 대한 출납원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 통장에 대한 중간수입금 출납원을 지정하시기 바라며, 유사 성격의 계좌 통폐합으로 계좌를 정비하고 회계관직이 아닌 직인을 사용하는 계좌 직인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비공무원 채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미실시 현황

채용대상자	사업명	채용기간	채용공고여부	비고
비공개	2025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도우미	25.2.3.~4.30.	**부**	동일인 2회 채용 초과
	2025년 농정사업 (공익직불제, 농어민수당)	25.5.7.~6.27.	**부**	
	2025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업무 보조원	25.8.4.~12.31.	**부**	
	2026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도우미	26.2.19.~6.12.	**부**	
	2026년 농정사업 (공익직불제, 농어민수당)	26.6.22.~7.31.	**부**	

나. 위법 · 부당내용

○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채용공고) ③에 따라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시사역을 제외하고 **동일 근로자를 공고 없이 채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2회에 한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동일인에 대하여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업무보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사역 결의만으로 동일인을 연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금480,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지출 사유	지출금액 (원)	대상 인원	사용일자	예산 과목	부적정내용	지급 명령번호
13건	4,036,900					
총무팀 당면업무 등 노고 격려	293,000	12	2023-12-26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568
찾아가는복지팀 당면업무 등 노고 격려	216,000	9	2023-12-26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567
옥룡동 직원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오찬(4.29.)	90,000	10	2024-05-02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175
직원 노고격려 오찬 (7.1.)	77,500	5	2024-07-08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285
자매결연 아름동 방문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160,200	40	2024-07-11	기관	- 특산품 지급관리 대장 미작성	00000291
옥룡동 직원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만찬(11.29.)	480,000	18	2024-12-12	부서	- 비정상 시간대 결제(23:49)	00000508
자매결연 아름동 방문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160,200	40	2024-12-09	기관	- 특산품 지급관리 대장 미작성	00000514
총무팀 직원 격려 오찬비 지급결의	206,500	11	2025-03-07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083
총무팀 직원 격려 오찬비 지급결의	177,000	10	2025-04-14	부서	-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 : 기관운영)	00000147
2025년 부서 화합행사비 지급결의	720,000	18	2025-06-24	정원	- 명단없음 (50만원 이상)	00000296
자매결연 아름동 방문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400,000	100	2025-06-25	기관	- 특산품 지급관리 대장 미작성	00000305

내방객 제공 음료 구입	510,500	-	2025-08-27	기관	- 명단없음 (50만원 이상)	00000430
내방객 제공 음료 구입	546,000	-	2026-03-13	기관	- 명단없음 (50만원 이상)	00000100

◎ 업무추진비 관리 소홀 내역

연번	시기	위반내용	비고
1	2024. 7. ~ 1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2	2023. ~ 2025.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집행 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13건(4,036천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과목 부적정, 특산품(기념품 등)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비정상 시간대 집행(23시 이후),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명단 미첨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미공개(2024. 7. ~ 12.),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2023. ~ 2025.)** 등 업무추진비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비정상 시간대 사용한 업무추진비 금480,000원을 회수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통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금184,09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통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일자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조기지급일)	비고
1	2023-07-27	2023-07-20	7	
2	2023-08-24	2023-08-18	6	
3	2023-09-21	2023-09-20	1	
4	2024-02-21	2024-02-20	1	
5	2024-03-27	2024-03-20	7	
6	2024-04-23	2024-04-19	4	
7	2024-05-21	2024-05-20	1	
8	2024-06-24	2024-06-20	4	
9	2024-08-21	2024-08-20	1	
10	2024-10-21	2024-10-18	3	
11	2025-09-18	2025-09-19	-1	
12	2025-12-18	2025-12-19	-1	
13	2026-04-17	2026-04-20	-3	

○ 통장기본수당 일할계산 부적정

연번	대상자	변동사유 발생일	지급일	지급금액(원)	적정액(원)	과다지급액(원)	비고
계	3명			1,200,000	1,015,910	184,090	
1	비공개	26.3.3.	26.3.20.	400,000	361,290	38,710	
2	비공개	26.3.3.	26.3.20.	400,000	361,290	38,710	
3	비공개	26.4.9.	26.4.17	400,000	293,330	106,670	원단위절사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리·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및 상여금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러함에도 옥룡동에서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통장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통장기본수당 **35건 중 3건은 최소 1일, 최대 3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10건은 최소 1일, 최대 7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26년 3월, 4월 통장 변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통장기본수당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할 계산하지 않고, 초과 지급한 금184,0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일시사역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2026. 6. 23. 기준)

일련번호	사역연도	사 업 명	사역인원	의무보험 가입여부		비고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계			560	34	526	
1	2023	꽃길조성	140	0	140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8	1	7	
2	2024	꽃길조성	192	0	192	
3	2025	꽃길조성	173	33	140	
4	2026	꽃길조성	47	0	47	

※ 미가입내역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 · 부당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호 “일용근로자” 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관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의무보험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2023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꽃길조성사업 일시사역 등 2개 사업 사역인원 560명 중 526명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지출품의 관리 및 계약정보 공개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소액 계약 건 품의유형 위반 내역

대금지급일	건명	거래처	금액(원)	품의유형		비고
				현황	적절	
20231004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	Ⓐ	2,640,000	일반	용역	
20231208	제4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음향 등 행사 장비 임차 결의	Ⓑ	4,340,000	일반	용역	
20231226	사무용 칸막이 부품 4종 구입	Ⓒ외 1	2,249,070	일반	물품	
20231228	(주민총회) 전통혼례체험 전통혼례복set 임차 결의	Ⓓ	7,000,000	일반	물품	
20231229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	Ⓔ기계	15,180,000	일반	용역	
20240119	2024년 청사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렌탈료 선납	Ⓕ(주)	6,378,390	일반	용역	
20240503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1차)	Ⓔ기계	6,160,000	일반	용역	
20240516	제1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음향 등 행사 장비 임차 결의	Ⓑ	3,740,000	일반	용역	
20240604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2차)	주식회사 Ⓖ	3,922,000	일반	용역	
20240604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2차)	주식회사 Ⓖ	3,888,000	일반	용역	
20240628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부직포 가방) 지급 결의	Ⓗ	3,380,000	일반	물품	

20240806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3차)	Ⓘ 주식회사	4,400,000	일반	용역	
20240808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4차)	Ⓔ기계	3,080,000	일반	용역	
20240802	2023. 7. 9. ~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2024년 5차)	주식회사 Ⓖ	7,040,000	일반	용역	
20240820	7.8.~10.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	Ⓙ	3,460,000	일반	용역	
20240821	2024년 하상정비사업(왕촌천) 추진 장비 임차료 지급(Ⓔ기계)	Ⓔ기계	11,330,000	일반	용역	
20240821	2024년 하상정비사업(왕촌천) 추진 장비 임차료 지급(Ⓖ)	주식회사 Ⓖ	18,590,000	일반	용역	
20240828	7.8.~10.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결의(Ⓔ기계)	Ⓔ기계	5,390,000	일반	용역	
20240919	제2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무대 등 행사 장비 임차 결의	Ⓚ	4,150,000	일반	용역	
20241105	2024 주민총회 및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 무대 등 행사 장비 임차	Ⓚ	4,640,000	일반	용역	
20250604	옥룡동행정복지센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 주식회사	5,000,000	일반	물품	
20250708	2025년 하상정비사업(왕촌천) 추진 장비 임차료 지급	Ⓜ	15,070,000	일반	용역	
20250708	2025년 하상정비사업(혈저천) 추진 장비 임차료 지급	Ⓝ주식회사	13,420,000	일반	용역	
20250902	2025년 7월 집중호우 긴급복구(1차) 장비 임차 지급	Ⓝ 주식회사	3,080,000	일반	용역	
20250902	2025년 7월 집중호우 긴급복구(2차) 장비 임차 지급	Ⓙ 주식회사	3,850,000	일반	용역	
20260112	2026년 옥룡동행정복지센터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산업	2,760,000	일반	용역	
20260116	2026년 청사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	Ⓕ(주)	6,378,390	일반	용역	
20260126	2026년 옥룡동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지급	(주)Ⓟ	5,124,000	일반	용역	

나. 위법·부당 내용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 별지 제 40호 서식 ~ 제41-1호 서식은 각각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승낙사항으로, 이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다 하여도 제반 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 중략 -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 · 감독 · 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소액 계약 건에 대하여 품의 유형을 위반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계약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① 계약대가의 지급 소홀

가. 현　　황

○ 대가지급 현황

연번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천원)	대　가 청구일	대　가 지급일	지　급 기　한	지연일
	18건						
1	ㅇㅇㅇ1길 맨홀 교체 및 전진배길 악취방지 맨홀 설치 공사	Ⓙ	4,040	2023-09-13	2023-09-20	2023-09-19	1
2	ㄹㄹ*통 ㄴㄴ*길 언덕 안전난간 설치(생활민원-재배정)	주식회사 Ⓠ	2,190	2023-12-05	2023-12-20	2023-12-11	9
3	청사 내외부 전광판 전기·통신선 설치	주식회사 Ⓡ	3,240	2023-12-07	2023-12-19	2023-12-13	6
4	ㅅㅅ2통 ㅈㅈㅈ뒷골길 농로블록 설치 공사	Ⓢ 산업(주)	13,300	2024-05-17	2024-05-28	2024-05-23	5
5	ㄱㄱ2통 용수로 플룸관 교체 공사	(유)Ⓣ	26,437	2024-12-13	2024-12-23	2024-12-19	4
6	청사 컨테이너 계량기 설치 및 사무실 내부 전기 배선 공사	주식회사 Ⓡ	4,000	2024-06-21	2024-06-28	2024-06-27	1
7	ㄹㄹ*길 안전펜스 철거 및 신설외 1건 공사(생활민원)	주식회사 Ⓠ	5,550	2024-06-27	2024-07-17	2024-07-03	14
8	ㅅㅅ3통 창벽로 배수로 정비 공사(생활민원)	(주)Ⓤ	1,500	2024-07-30	2024-08-06	2024-08-05	1
9	청사 복지물품 창고 전원 공사	Ⓡ	1,200	2024-08-21	2024-09-10	2024-08-27	14
10	ㅅㅅ1통 ㅇㅇ안길 수문게이트 제작	Ⓥ	4,400	2024-09-09	2024-09-25	2024-09-13	12
11	ㅅㅅ1통 농수로관 설치외 3건 공사(생활민원, 재배정)	Ⓙ 주식회사	4,030	2024-10-23	2024-10-30	2024-10-29	1

12	ㄹㄹㄱㄱ*단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생활민원, 재배정)	주식회사 W	2,180	2024-11-21	2024-11-28	2024-11-27	1
13	ㄹㄹ*통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 공사	(주)X	18,050	2025-05-27	2025-06-04	2025-06-02	2
14	ㅅㅅ3통 화단 조성 사업	주식회사 Y	18,373	2025-06-02	2025-06-17	2025-06-10	7
15	(생활민원) ㄱㄱ2통 ㄱㄱ동길 배수로 공사	주식회사 Q	9,405	2025-06-13	2025-06-24	2025-06-19	5
16	청사 복지물품 창고(컨테이너) 구입	Z	21,000	2024-06-27	2024-07-04	2024-07-03	1
17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 결의(국화)	AA	6,170	2024-10-23	2024-11-04	2025-10-29	6
18	민원실 필경대(BF인증) 구입	AB	3,300	2024-09-28	2024-10-10	2024-10-08	2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아무런 사유 없이 **2023년 월성산1길 맨홀 교체 및 전진배길 악취방지 맨홀 설치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현황과 같이 **최소 1일 최대 14일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② 계약서류 징구 소홀

가. 현 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첨부 현황

연번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원)	첨부여부	비고
	6건 외 다수				
1	2024. 제2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 용역	B	2,000,000	**부**	
2	2024. 제3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 용역	B	2,000,000	**부**	
3	2025년 옥룡동 주민총회 행사 용역	AC	4,550,000	**부**	
4	청사 복지물품 창고(컨테이너) 구입	Z	19,910,000	**부**	
5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사업 재료 구입 결의(국화)	AA	6,170,000	**부**	
6	민원실 필경대(BF인증) 구입	AB	3,130,050	**부**	
	외 다수				

나. 위법 · 부당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1. 고위공직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체결제한)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2024. 제2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용역** 외 다수 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를 누락**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③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가.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내역

사 업 명	대 가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공급가액	적정 금액	매입 금액	과소 매입 금액	도급자	비 고
계	**2건**					**1,630,000**		
청사 시정홍보 및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2023-12-20	49,070,000	44,609,091	1,115,000	0	1,115,000	주식회사 AD	
ㅅㅅ1통 왕촌길 블록 설치공사	2025-06-26	22,744,050	20,676,409	515,000	0	515,000	주식회사 AB	

나. 위법 · 부당사항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 금공급 가액의 2.5/100**를,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인 경우에는 대금공급가 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2023. 3. 2.부터 20백만원 미만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3년 청사 시정홍보 및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외 1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630,000원을 과소매입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 시 기한 엄수 및 계약서류 징구에 철저를 기하고 과소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1,630,000원 징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옥룡동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작성 현황(2026. 6. 기준)

시기	신용카드 사용부 작성	전자문서 보고 (월1회)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 작성	비고
2023	X	X	X (10.~ 12.)	10. ~ 12. 작성했으나 결재 X
2024	X	O	X (1. ~ 12.)	1. ~ 3. 작성했으나 결재 X
2025	X	O	O (1. ~ 7.)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2025.7. ~)
2026	X	O	X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 2백만원 초과 카드결제 내역

사용일자	건명	사용처	금액(원)	비고
2024-06-05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부직포가방)	○○○○	3,380,000	수의계약 서류 미첨부 품의유형 위반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의 발

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의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부를 작성하거나 e호조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추출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월1회 내부결재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에는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3년도 **신용카드 사용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전자결재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23. 10. ~ 2024. 12.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만 한 채로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 40호 서식 ~ 제41-1호 서식은 각각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승낙사항으로, 이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다 하여도 제반 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초과 금액을 결제하면서 계약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회계서류 증빙 미흡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계서류 증빙 미흡 내역

품의일시	건명	증빙자료	부적정내용	비고
2023-12-27	2023년 12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 시간외근무자 급식결의(공문) - 초과근무 목록(12월) - 급식비 집행대장(12월)	- 급식비 집행대장 11월 분과 동일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

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회계서류의 증빙이 미흡하여 정당한 채권 금액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급식비를 집행하여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에 대한 신용도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989,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　계	7건	135,148	132,159	-2,989			
ㄹㄹ*통(***-2)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840㎡	12,171	11,834	-337	26.05.06.~ 26.06.02.	콘크리트포장 미실시	㈜●●●●
ㄹㄹ*통(**-5) 휀스 및 보강토 설치공사	개비온 옹벽 L=16m	17,500	17,136	-364	26.04.29.~ 26.05.19.	메쉬휀스 일부 미철거	◎◎◎◎㈜
ㄹㄹ**통(**3) 야외체육시설 우레탄 포장공사	우 레 탄 포 장 A=289㎡	14,600	14,045	-555	26.04.15.~ 26.05.12.	평행봉 등 재설치 미이행	㈜Ⓧ
ㄱㄱ*통 신기동길 전석 설치공사	전 석 쌓 기 L=60m	28,038	27,605	-433	25.04.21.~ 25.05.28.	양수작업 미이행	◇◇◇◇㈜
ㅅㅅ*통 소하천(847-54) 수해복구공사	박 스 암 거 L=4m	39,805	39,025	-780	24.06.14.~ 24.07.13.	물막이 등 미설치	◆◆◆◆㈜
ㄱㄱ*통 신기동길 도막 포장공사	콘크리트 및 도막포장 A=105㎡	11,934	11,732	-202	23.10.27.~ 23.12.07.	줄눈 미설치	㈜□□□□
ㄱㄱ*통 큰욧골길 수로관 설치공사	플륨관 L=46m	11,100	10,782	-318	23.11.13.~ 23.12.10.	양수작업 미시행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시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상기와 같이 【ㄹㄹ*통(***-2) 아스콘 포장공사】외 6건을 추진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이행하지 않거나 물막이 시설 및 양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을 적정하게 시공·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금2,989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7건의 합계 **2,989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금1,548,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준공금액	정산				
합계	5건	60,680	59,132	-1,548			
ㅅㅅ동(**2) 가로수 식재공사	둥근소나무 식재 24주	19,410	19,313	-97	26.05.22.~ 26.06.09.	건설기계대여금, 환경보전비 미정산	㈜Y
ㅅㅅ동(**-7) 가로수 식재공사	남천나무 식재 1050주	15,460	15,391	-69	26.05.22.~ 26.06.09.	건설기계대여금, 환경보전비 미정산	㈜Y
ㄹㄹ*통(***-2)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A=840㎡	12,220	11,105	-1,115	26.05.06.~ 26.06.02.	폐기물처리비 오정산	㈜●●●●
ㄱㄱ*통 ㅌㅌㅌ길 배수로 설치공사	플륨관 L=101m	5,490	5,432	-58	25.04.10.~ 25.04.30.	건설기계대여금, 환경보전비 미정산	S
ㄹㄹㅇㅇ*단지 운동기구 바닥설치	콘크리트포장 A=110㎡	8,100	7,891	-209	23.11.10.~ 23.12.07.	폐기물처리비 미정산	㈜X

나. 위법·부당사항

○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환

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라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을 작성하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처리비를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ㅅㅅ동(**2) 가로수 식재공사】 외 4건을 준공하면서 도급금액 산출서에 명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금1,548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건설사업 추진 시에는「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수수료, 환경보전비를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건설공사 5건에 대한 **금1,548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합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19건	497,824	364,847	197,656		
ㄹㄹ*통 마을안길 언덕 난간 설치공사	핸드레일, 디자인형 울타리	25,775	5,370	20,404	2023.10.27.~ 2023.12.07.	㈜□□□□
ㅅㅅ동 ㅅㅅ사 계단 보수 공사	계단 설치 B=2.4m, L=12.3m	22,274	11,400	10,874	2023.11.06.~ 2023.12.01.	◇◇◇◇㈜
ㄹㄹ ㅇㅇ*단지아파트 운동기구 바닥 설치	콘크리트, 탄성포장	21,216	8,110	13,106	2023.11.10.~ 2023.12.07.	㈜Ⓧ
ㄱㄱ*통 ㅋㅋㅋ길 수로관 설치공사	수로관설치	20,187	11,100	9,087	2023.11.13.~ 2023.12.10.	㈜Ⓤ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비가림시설1식	19,000	19,000	0	2023.12.13.~ 2023.12.27.	■■■■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1식	19,000	19,000	0	2023.12.13.~ 2023.12.27.	■■■■
ㄱㄱ*통 ㅌㅌㅌ길 농로 블록 설치공사	축조블록설치, 콘크리트포장	22,220	15,670	6,550	2024.05.22.~ 2024.06.10.	㈜Ⓤ
ㄱㄱ*통 용수로 플륨관 교체 공사	수로관 집수정 울타리	40,537	21,837	18,700	2024.06.04.~ 2024.11.30.	(유)Ⓣ
ㅎㅎ통 ㅎㅎㅎ골길 석축 설치공사	콘크리트포장, 석축설치	35,770	25,154	10,616	2024.06.04.~ 2024.06.20.	△△△△㈜
ㄹㄹ동 ㄴㄴ*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차선도색	22,341	9,610	12,731	2024.04.23.~ 2024.05.20.	▲▲▲▲㈜
ㅅㅅ*통 ㅈㅈㅈㅈ길 배수로 설치	전석쌓기 수로관 설치	32,060	20,117	11,943	2024.11.13.~ 2024.12.10.	㈜▽▽▽▽
ㄱㄱ*통 ㄱㄱ동길 전석 설치공사	전 석 쌓 기 L=60m,H=2m	34,855	28,038	6,817	2025.04.21.~ 2025.05.28.	◇◇◇◇㈜

ㄹㄹ*통(ㄷㄷㄷㄷ*길 **)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비가림시설1식	21,850	20,138	20,138	2025.07.03.~ 2025.07.23.	▼▼▼▼㈜
ㅅㅅ*통(***-1)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비가림시설1식	20,900	20,900	0	2025.08.19.~ 2025.09.05.	㈜◁◁◁◁
ㄱㄱ*통(***-4) 배수로 설치 공사	배수로설치	32,100	32,100	30,970	2026.04.01.~ 2026.04.21.	㈜◀◀◀◀산업
ㄹㄹ*통(***-1) 담장 설치 공사	담장설치공사	45,789	32,240	13,549	2026.04.14.~ 2026.05.11.	㈜◁◁◁◁
ㄹㄹ*통(***-2) 아스콘 포장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차선도색	23,540	26,653	12,171	2026.05.06.~ 2026.06.02.	㈜●●●●
(주민총회) ㄱㄱ골 역사공원 조롱박 터널조성사업	트랠리스 제작·설치	19,000	19,000	0	2026.05.28.~ 2026.06.16.	㈜▷▷▷▷건설
ㅅㅅ동(**2) 가로수 식재공사	가로수식재24주	19,410	19,410	0	2026.05.22.~ 2026.06.09.	㈜Y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비용(환경보전비 등)은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및 사업비 산정 시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ㄹㄹ*통 마을안길 언덕 난간 설치공사】외 18건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비를 공사 원가(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비용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현장대리인
	합　계	10건	169,938			
1	ㄹㄹ*통 마을안길 안전난간 교체 공사	핸드레일, 디자인형 울타리 L=99m	25,775	2023.10.27.~2023.12.07.	㈜□□□□	Q
2	ㄱㄱ*통 ㄱㄱ동길 도막포장공사	도막 포장 A=105㎡, 경계석 설치 82m 등	17,613	2023.10.27.~2023.12.07.	㈜□□□□	Q
3	ㄱㄱ*통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비가림시설 A = 31.28㎡	17,000	2023.12.13.~2023.12.27.	■■■■	W
4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A = 38.5㎡	19,000	2023.12.13.~2023.12.27.	■■■■	W
5	ㄹㄹ*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비가림시설 A = 35.2㎡	19,000	2023.12.13.~2023.12.27.	■■■■	W
6	ㅅㅅ*통(**5) 가로수길 조성	소나무(둥근형 H=1.2, W=1.5) 31주	18,307	2025.05.21.~2025.06.05.	Ⓨ㈜	R
7	ㅅㅅ*통(**6, **6-5) 화단조성	블루애로우 180주, 꽃잔디2,000본	18,373	2025.05.21.~2025.06.02.	Ⓨ㈜	R
8	ㅅㅅ동(**-7) 가로수 식재공사	가로수식재(남천나무)(H 1.0) : 1050주	15,460	2026.05.22.~2026.06.09.	㈜Ⓨ	R
9	ㅅㅅ동(**2) 가로수 식재공사	가로수식재(둥근소나무)(H1.5*W1.8) : 24주	19,410	2026.05.22.~2026.06.09.	㈜Ⓨ	R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인의 배치 시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에 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ㄹㄹ*통 마을안길 안전 난간 교체 공사】외 8건의 공사를 착공하면서 계약업체의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건설기술자의 중복 배치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승낙 없이 동일 공사기간 내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소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현장대리인 배치 등 건설기술인에 관한 착공 서류 검토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 분		정기 검사(4월, 10월)			만료검사(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비 고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계		603	334	171	129	27	105	0	
2023년	상반기	90	84	6	0	0	0	-	
	하반기	76	0	76	29	4	25	-	
2024년	상반기	120	120	0	28	15	13	-	
	하반기	113	14	1	16	0	16	-	
2025년	상반기	88	0	88	14	0	14	-	
	하반기	74	74	0	32	6	26	-	
2026년	상반기	42	42	0	10	2	11	-	
	하반기	-	-	-	-	-	-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이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행안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 기타사항 : 정기검사 : 4월(상반기), 10월(하반기)에 실시 (회계과 관련 공문 참고)

➪ 그럼에도 옥룡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276건(정기검사 171건, 만료검사105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위임장 확인·수리 부적정 (위임일자, 위임사유, 관계 등)	**75**	14	37	14	6 (수감기관 미확인 1)	
위임장 재사용 방지 조치 미흡 (접수인, 발급일자, 발급번호)	**다수**	25	**2024년 ~ 2026년 전체**			'26년분 현지시정
발급대장 작성·관리 소홀 (발급번호, 대리인, 발급통수 등)	**74**	8	1	63 (수정액 사용 1)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23. 6. 2. ~ 2026. 6. 22.)

나.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본인 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초일 포함)이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 위임장은 수리 불가하다.

○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윗면을 가리개나 흰 종이로 가린 후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비고란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법 제5조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인감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발급기관에서는 본인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2023. 6. 2.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옥룡동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임장에 위임일자, 위임사유, 위임인과의 관계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발급한 건이 75건, 위임사유가 ‘구치소 수감’ 임에도 수감기관 확인 없이 발급한 건이 1건이었으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접수인, 발급번호, 발급일자 표시)하여야 함에도 2023년은 25건,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간 전체에 걸쳐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대리인 인적사항, 발급통수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건이 73건,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에 수정액을 사용하여 정정한 건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변경 신고 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 작성 건수	변경	**409**	117	120	110	62
	신규	**161**	31	56	46	28
일련번호 기재, 담당 결재,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 소홀		**감사 대상기간 전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23. 1. 1. ~ 2026. 6. 19.)

나. 위법·부당사항

○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은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수료첨부란에는 시행령 제19조(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 인감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대장에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을 기재하여 담당자, 담당 결재를 받아 관리하게 되어 있다.

〈 인감변경(방문 · 서면) 신고 관리대장 〉

결 재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 뿐만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던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감의 신고인이 질병 · 출산 · 징집 · 복역 · 유학 ·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서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에 인감변경과 신규등록을 혼재하여 작성 · 관리하였으며, 일련번호란에 일련번호가 아닌 변경일자를 기재하였고, 결재권자(팀장)의 결재를 받지않고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24년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총 4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서에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일이 기재되지 않은 건이 3건, 대리인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건이 1건, 서면신고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건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인감변경 관리대장에 담당 팀장 결재와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 기재를 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입(재등록)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분	합계		관내		관외		비고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2023년	804	645	111	85	693	560	
2024년	830	656	154	116	676	540	
2025년	864	684	221	164	643	520	
2026년	498	397	154	123	344	274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 2023. 1. 1. ~ 2026. 5. 31.)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하며, 방문 및 인터넷(정부 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확인용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를 관할 이·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서명(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

인용 자료의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함)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통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그러나 옥룡동의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이하 “사후확인서”라 한다)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주 여부, 세대주(원) 서명, 확인자 의견(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 기재되지 않아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리)장 확인만 되어 있어 사실상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확인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확인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기한 내에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등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문화이용권 신청	3,473	908	882	858	82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2023. 1. 1. ~ 2026. 6. 19.)

나. 위법·부당사항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이용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하단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이 필수사항으로 수임자(대리인)이 동의해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22. 1. 27. 개정으로 수임자의 정보제공동의 관련 사항 변경)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재충전, 합산, 비밀번호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 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해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임자(대리인)	[ ]	[ ]

본인은 위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수임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정 전 서식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임자(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별도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서식이 개정된 2022. 1. 27. 이후부터 2025년까지 문화이용권 대리 신청을 받으면서 개정 이전의 위임장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청인(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 공용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를 전산 또는 공용발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감사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다수 신청서류에서 신청서에 신청인(본인)의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가 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인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급여관리자 지정 현황 (2023. 1. 1. ~ 감사일 현재)

성명	등록유형	주거유형	지정일자	점검주기		급여 관리자	급여관리자 유형
				연1회	반기별		
비공개	18세 미만	무료임차	2012-03-23		ㅇ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18세 미만	자가	2025-07-02		ㅇ	비공개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2-03-29		ㅇ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정신장애인	무료임차	2013-03-0-		ㅇ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발달장애인	병원	2012-03-29		ㅇ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정신장애인	병원	2012-02-15		ㅇ	비공개	친인척

② 급여관리실태 점검 현황

구분	관리대상자	급여관리자	최종 점검결과	점검조치입력	비고
2023년 상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3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4년 상반기	비공개	비공개	일부 부적정 (OOO)	환수관련 공문 송달예정(ㅇㅇㅇ)	미조치
2024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5년 상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5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 관리자의 급여 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를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 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타 목적에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정 대응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서,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서식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점검표에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과 점검자(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확인자(읍면동장)를 적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날인(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서식 38호), 지정서 교부(서식 43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인지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서식에는 급여관리자 날인과 함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자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의사능력 미약 수급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급여관리자 지정서, 점검표, 통장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하고, 급여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급여관리 점검한 내용을 기재한 점검표에 점검자(사회복지업무담당자)

와 확인자(읍면동장)의 날인(서명) 후 급여관리자 지정서,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점검서류에 점검표 및 급여관리자 지정서 미첨부(2024년 하반기는 점검표에 점검자 서명만 되어 첨부)

2) OOO(급여관리자 OOO)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월 간식비·치료비 명목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2만원이 이체되었으며, 2023년은 30만원(2. 7.), 2백만원(2. 28.), 50만원(10. 10.), 20만원(12. 7.), 2024년은 2백만원(4. 23.), 30만원(9. 13.), 20만원(10. 10.) 등 총 862만원이 이체 또는 인출되었으나 점검서류에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조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24. 4. 23. OOOO의 계좌로 이체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점검표의 조치사항에 “환수 관련 공문 송달 예정(7. 31.까지 조치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확인됨

3) OOO(급여관리자 OOO)의 경우 2023. 3. 9. OOO에게 1천만원이 이체되었고, OOO 명의의 계좌로 정기예금을 개설한 것을 확인하고도 점검결과 적정으로 종결한 사실이 있음.

(※ ‘25년 급여관리점검에서 해당 예금이 수급자 명의로 변경·시정조치사실 확인)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급여관리 실태 점검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수급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조치 후에는 점검표에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취소	반환통보서		장애인등록증		비고
		통보	미통보	회수	미회수	
합계	113	17	96	54	59	
2023년	20	5	15	13	7	
2024년	33	9	24	24	9	
2025년	39	1	38	12	27	
2026년	21	2	19	5	16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 2023. 6. 2. ~ 2026. 6. 19.)

나. 위법・부당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단, 사망자의 경우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은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에는 장애인의 사망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유족 등에게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옥룡동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안내하여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113명 중 17명에 대해서만 반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사망자의 유족 등에게는 반환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59명의 장애인등록증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등록증이 회수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등록증 반환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업무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관내 장제급여 지원대상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191	45	50	62	34
장제급여 신청·지원자	94	22	24	30	1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 2023. 6. 2. ~ 2026. 6. 19.)

나. 위법·부당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신고·신청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과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서도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사항 확인대상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 해당되고 이 중 사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으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과 장제급여 신청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수급자 변동사항 |

변동사항 확인 항목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자료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 수동처리 가능	①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및 소득인정액 재산정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거주 여부 등 확인 후 중지사유 해당할 경우 보장 중지 등 조치
가구원 변동	출생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실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따라 처리

➪ 그러나 옥룡동의 장제급여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의 사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 6. 2.부터 2026. 6. 19. 까지 장제급여 지원대상자 총 191명 중 94명(49.2%)에게만 장제급여가 지원되는 등 장제급여 신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수급자 유족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제급여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지원대상자 유족에게 장제급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49,78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휴가종류	사용일자	사용시간	부당 사용시간	연가보상 1일분	환수금액 (원)	비고
계	1명			5시간	5시간		**49,780**	원단위 절사
비공개	비공개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2024-10-30	1시간	1시간	75,250	**9,406**	증빙 미첨부
			2025-06-25	4시간	4시간	80,758	**40,379**	증빙 미첨부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서는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서는 임ㅎㅎ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룡동에서는 특별휴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여, 2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적정한 돌봄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정 사용된 특별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49,78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24,62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월액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5명	7일	74,620	0	74,620	원단위 절사
비공개	2024.1.4./1.15./1.24.	3일	31,980	0	31,980	출장내역 미결재
비공개	2024. 9. 6.	1일	10,660	0	10,660	출장내역 없음
비공개	2024. 11. 29.	1일	10,660	0	10,660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024. 12. 10.	1일	10,660	0	10,660	출장내역 없음
비공개	2025. 10. 14.	1일	10,660	0	10,660	관할구역 외 출장

○ 국내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1명	5건	50,000	0	50,000	
비공개	2024.10.21. 2025.07.25. 2025.08.01. 2025.08.26. 2025.09.22.	15:03~16:16 14:14~15:41 13:16~14:54 10:09~11:41 09:30~10:30	50,000	0	50,000	출장지 2km이내 및 관용차사용시4시간미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에 따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를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옥룡동에서는 출장내역이 없거나 출장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출장 5건, 관할구역 외 출장 2건, 근무지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출장에 정액분 지급 16건, 공무용 차량 이용한 출장에 여비 미감액 1건 등 총 24건의 국내여비를 초과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무원 여비 규정」및「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124,62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당직근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도	구분	(총) 건수	비고
계		**515**	
2023	당직순찰 시간 부적정	57	2023. 6. 1.~
	당직순찰 미실시(순찰기록없음)	14	2023. 6. 1.~
2024	당직순찰 시간 부적정	141	
	당직순찰 미실시(순찰기록없음)	9	오전10시이후 순찰 포함
2025	당직순찰 시간 부적정	195	
	당직순찰 미실시(순찰기록없음)	4	오전10시이후 순찰 포함
2026	당직순찰 시간 부적정	78	~2026. 6. 22.
	당직순찰 미실시(순찰기록없음)	16	~2026. 6. 22.
	당직보고 누락	1	2026.4.23.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제4항에 의거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같은 규정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

1항제1호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에 대한 순찰 및 보안점검을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분	지 역		시 간	비 고
	사무실 외 부	**무인경비 시설설치**	**퇴근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 및 당직근무 종료 전 1시간 이내 각 1회**	**순 찰 코 스**
		무인경비 시설미설치	2시간 마다	순 찰 코 스
보안 점검	사무실 내 부		퇴근시간 경과 후 2시간 이내 1회 특근 직원 퇴청 후 1시간 이내	특근직원이 있는 경우는 2회 실시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3항 및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에 의거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각 사무실 순찰사항 등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당직근무자가 규정 순찰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총 471건, 순찰 미실시 또는 순찰기록을 누락한 사례가 총 43건, 당직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1건 발생하는 등 당직근무 관리가 소홀하였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당직근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현황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	발급면적 (㎡)	취득목적	비 고
		리·동	번지				
2025-12-22 2025-12-29	비공개	ㅅㅅ동	***-5	30	30	주말체험영농	소유농지 1,000㎡ 초과
2025-12-02 2025-12-04	비공개	ㄱㄱ동	***-12 ***-14	142 460	142 460	농업경영	
2025-11-21 2025-11-25	비공개	ㄱㄱ동	***-12 ***-14	142 460	142 460	농업경영	
2025-02-13 2025-02-19	비공개	ㅅㅅ동	***-5	596의 1/2	596	주말체험영농	
2025-02-14 2025-02-19	비공개	ㅅㅅ동	***-5		596	주말체험영농	
2025-01-21 2025-02-11	비공개	ㅇㅇ동	**-3 **-2	458.5 430.5	655 615	농업경영	

나.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 아울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정관,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옥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소유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건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2건에 대해서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취득하거나 신청한 필지가

전체 면적에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례가 2건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업법인 정관, 재직·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미비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다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옥룡동장은

○「농지법」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